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안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540

3) 제출일자 : 2011년 10월 31일

4) 회부일자 : 2011년 11월 3일

5) 추경예산 편성 사유

- 불균형적인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사업취소, 물량감소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실시함
- 감추경으로 확보된 재원은 법정 의무경비 등의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

6)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예산액(A)	2011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가율 (%)
계	2,492,702	2,272,520	220,182	9.69%
일 반 회 계	670,647	626,483	44,164	7.05%
교통사업특별회계	994,136	982,937	11,199	1.1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800	101,800	0	0.00%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726,119	561,300	164,819	29.36%

□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 일반회계

- 기정예산 6,264억 83백만원보다 441억 64백만원(7.0%)이 증가한 6,706억 47백만원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

- 기정예산 9,829억 37백만원보다 111억 99백만원(1.1%)이 증액된 9,941억 36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기정예산 1,018억원으로 편성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 기정예산 5,613억원보다 1,648억 19백만원(29.4%)이 증액된 7,261억 19백만원으로 편성

2. 추경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안)

-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3,529억 64백만원보다 792억 94백만원(5.8%)이 감소된 1조 2,736억 70백만원으로 편성됨

·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810억 81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48억원

□ 세출예산(안)

-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2,725억 20백만원 대비 2,201억 82백만원이 증가(9.7%)한 2조 4,927억 2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	6,706억 47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9,941억 36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8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7,261억 19백만원

II.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9호선 최소운임수입 보장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 △39억 34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80억 98백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B-A)	증가율 (%)
총 계	670,647	626,483	44,164	7.0%
추경예산 소계	670,647	626,483	44,164	7.0%
사업비	93,142	97,076	△3,934	△4.1%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0,583	20,583	-	0.0%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28,800	28,800	-	0.0%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 수입 보장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	37,966	41,900	△3,934	△9.4%
지하철 고가 방음벽및 구조물 보장	2,000	2,000	-	0.0%
충무로역 FRP교체	2,634	2,634	-	0.0%
전동차내 CCTV 설치	1,159	1,159	-	0.0%
전출금	577,505	529,407	48,098	9.1%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454,139	406,041	48,098	11.8%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 전출금	24,500	24,500	-	0.0%
지방채상환	98,866	98,866	-	0.0%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기정예산 1조 1,603억 75백만원보다 792억 94백만원(6.8%) 이 감소된 1조 810억 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통관리계정은 추경후 기정예산대비 예산규모 감소에 따라 '11년 예수금 소요액이 감소하여 재정투융자 예수금 200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저상버스 도입물량이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40억원을 감추경
 - 주차장관리계정은 '09~'10년 결산 결과 도시계획세(10%) 미정 산분 480억 98백만원을 추가 계상
 -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마곡지구개발사업에서 455억 70백만원, 양주·옥정·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336억85백만원, 의정부 민락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50억원,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서 191억 37백만원 감액 계상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1,081,081	1,160,375	△79,294	△6.8%
교통관리계정		818,032	842,032	△24,000	△2.9%
사업수입	소 계	28,196	28,196		
	혼잡통행료	10,343	16,225		
	공영차고지 수입	1,628	10,343		
	공공자전거 운영 수입	0	0		
	장애인콜택시운행	1,628	1,628		
사업외 수입	소 계	771,095	791,095	△20,000	△2.5%
	공공예금이자수입	889	889		
	순세계잉여금	71,576	71,576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500	2500		
	일반회계전입금	313,441	313,441		
	예수금수입	292,000	312,000	△20,000	△6.4%
	교통유발부담금	85,869	85,869		
	운수과징금 기타 잡수입 등	1,831 2,989	1,831 2,989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754	754		
보조금	소 계	17,987	21,987	△4,000	△18.2%
	국고보조금	8,134	12,134	△4,000	△33.0%
	광·특별회계보조금	9,853	9,853		
주차장관리계정		168,218	120,120	48,098	40.0%
사업수입	소 계	14,970	14,970		
	주차요금수입	14,970	14,970		
사업외 수입	소 계	152,338	104,240	48,098	46.1%
	순세계 잉여금	0	0		
	민간융자금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140,698	92,600	48,098	51.9%
	예탁금이자수입	1,594	1,59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37	837		
	과태료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7,079 2,130	7,079 2,130		
보조금	소 계	910	910		
	광·특별회계보조금	910	910		
교통개선분담금계정		57,831	161,223	△103,392	△64.1%
사업외 수입	일반부담금	57,313	160,705	△103,392	△64.3%
	순세계잉여금	518	518		
교통방송계정		37,000	37,000		
사업수입	소 계	9,480	9,480		
	방송광고수입	9,480	9,480		
사업외 수입	소 계	27,520	27,520		
	순세계잉여금	3,000	3,000		
	일반회계전입금 기타잡수입	24,500 20	24,500 20		

나. 세출예산안

【교통관리계정】

- 저상버스 도입(△100억원)
 - 저상버스 도입 물량 감소(△100대)에 따른 국비교부액 및 시비 감추경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1억 16백만원)
 -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법규위반자에 대한 심화교육대상 제외에 따른 불용예산액 감추경
- 자전거 주차장 설치(△3억원)
 - 시·구 매칭사업으로 강서구 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업취소로 감추경
- 서울도심 및 주요지역 횡단보도 정비(△4억원)
 - 서울대 입구 교차로 횡단보도와 위치가 중복되는 타사업 예산으로 시행하여 예산절감액을 감추경
- 노인보호구역 개선(△7억 43백만원)
 - 노인보호구역 지정신청 감소에 따른 감추경
- 무장애 공간 조성(△1억 62백만원)
 - 특정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 전역의 교통시설 이용환경 개선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취소

○ 장애인 콜택시 운영(13억 18백만원)

- '03년 해고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무효소송 판결결과(임금지급조치)에 따른 추경편성

○ 통일·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3억 64백만원)

- 통합감리시스템제도(타사업과 통합하여 감리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계상

○ 예비비(△195억 44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예비비 감액 계상

○ 재정투융자 기금상환(30억 13백만원)

- 편성시 이자율(약 3.65%) 대비 이자율 상승(약4.48%)으로 4/4 분기 집행예정액 부족분 추경편성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96억원)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개선분담금 중 연내 수납이 불가능한 미수납분에 대한 감액 계상

【주차장관리계정】

- **Green Parking 사업(△1억 41백만원)**
 - 자치구 수요 물량감소에 따른 불용액 감추경
- **금호 1가동 응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33억 85백만원)**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부동의 (2011.10.4)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감추경
-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13억 99백만원)**
 - 사전절차지연(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취소로 감추경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50백만원)**
 - 자치구 수요물량 감소에 따른 예상 불용액 감추경
- **역세권지역 주차상한제 운영방안 용역(△84백만원)**
 - 조례개정('11.3.17)으로 인해 사업목적인 역세권 지역이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취소로 감추경
-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2억원)**
 - 교통서포터즈의 수시퇴직, 채용기피 등에 따른 채용연기로 발생한 불용액 감추경

○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1억원)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으로 신고에서부터 포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 연장에 따른 불용 예상액 감추경

○ 예비비(△135억 43백만원)

- 주차장관리계정 예비비 조정 계상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670억원)

- 감추경액과 법정전출금 증가분에 대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관리계정)에 계상

[2011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1년 (기정예산)	2011년 (추경안)	증감	증감률
교통사업특별회계	982,937	994,136	11,199	1.1%
교통관리계정	845,331	818,032	△27,299	△3.2%
추경소계	106,805	73,745	△27,298	△25.6%
재정투융자기금상환(교통관리계정)	21,375	24,388	3,013	14.1%
예비비	21,408	1,864	△19,543	△91.3%
저상버스 도입	30,000	20,000	△10,000	△33.3%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1,449	1,333	△116	△8.0%
자전거 주차장 설치	1,146	846	△300	△26.2%
서울도심 및 주요지역 횡단보도 정비	1,470	1,070	△400	△27.2%
노인보호구역 개선	1,000	257	△743	△74.3%
무장애 공간 조성	162	-	△162	△100.0%
장애인콜택시 운영	22,669	23,987	1,318	5.8%
통일·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6,125	5,761	△364	△5.9%
주차장관리계정	120,120	168,218	48,098	43.9%
추경소계	57,127	105,225	48,098	84.2%
Green Parking 사업	12,486	12,345	△141	△1.1%
금호1가동 응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3,385	-	△3,385	△100.0%
관광버스주차장 건설	7,715	6,316	△1,399	△18.1%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200	150	△50	△25.0%
역세권지역 주차상한제 운영방안 용역	84	-	△84	△100.0%
예비비	14,991	1,448	△13,543	△90.3%
재투기금예탁금	14,300	81,300	67,000	468.5%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3,766	3,566	△200	△5.3%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200	100	△100	△50.0%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7,486	7,886	△9,600	△54.9%
추경소계	10,500	900	△9,600	△91.4%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0,500	900	△9,600	△91.4%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648억 19백만원

Ⅲ. 주요 분석내용

1. 총괄

- 도시교통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방송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으로 편성되고 도시교통본부에는 세출만 계상하였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725억 20백만원 대비

2,201억 82백만원(9.7%)이 증가한 2조 4,927억 2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64억 83백만원보다

441억 64백만원(7.0%)이 증가한 6,706억 4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460억 37백만원보다

1,760억 18백만원(10.7%)이 증가한 1조 8,220억 55백만원입니다.

2. 회계별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6,264억 83백만원)보다 7.0% 증가(441억 64백만원)한 6,706억 47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변동내용은 2건으로
 -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 보장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 39억 34백만원 감액하고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480억 98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관리계정의 도시계획세 미납분 정산을 위한 법정 전출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9,829억 37백만원)보다 1.1% 증가(111억 99백만원)한 9,941억 36백만원입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증액사업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포함하여 3건이며(총 713억 31백만원)
 - 감액사업은 저상버스 도입을 포함하여 총 17건입니다(총 601억 32백만원).

※ 증액 사업 내용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교통관리계정) (30억 13백만원)
- 장애인콜택시 운영 (13억 18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670억원)

※ 주요 감액 사업 내용

- 저상버스 도입 (100억원)
- 자전거 주차장 설치 (3억원)
- 서울도심 및 주요지역 횡단보도 정비 (4억원)
- 노인보호구역 개선 (7억 43백만원)
- 금호1가동 응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33억 85백만원)
- 관광버스주차장 건설 (13억 99백만원)
- 청라~화곡 간선급행체계 개선 (96억원)

- 도시교통본부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예측 실패로 국비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을 감추경하였는 바, 국비예산 편성 이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국비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도시교통본부는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금호1가동 응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이 취소되었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기관 부족으로 관련 예산이 감추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5,613억원)보다 29.4% 증가(1,648억 19백만원)한 7,261억 19백만원입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변동내용은 1건으로
 - 도시철도공채 매각대금 전출을 위한 1,648억 1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가는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채매각대금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 금번 2011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지연 및 취소, 관련 기관과의 협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사업예산에 있어 감추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면밀하지 않은 사업예측으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 바, 향후 면밀한 사업예측을 통해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공사전출금

- 동 사업은 도시철도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을 운영기관에 전출하는 사업으로 '11년 본예산을 통해 5,63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채 매출금 증가에 따른 초과매출액 1,648억 19백만원을 추가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도시철도공채는 대부분 차량구매시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채권 판매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 예산 대비 29.3%의 추가 매출금이 발생한 것은 차량 판매 규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향후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등을 산정할 때 과거추이 및 장래여건 분석 등, 면밀한 매출규모 분석을 수행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정투용자기금 상환

- 동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부족분의 충당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투용자기금 조례」에 따라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4/4분기 상환이자액 부족분 30억 13백만원을¹⁾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11년 예산 편성시 적용이자율(3.65%) 대비 현재 이자율(4.48%)이 증가한 것에 기인

- 재정투융자기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교통본부에서는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5,065억원을 차입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환한 후 남은 잔액은 4,289억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현황〉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7년	'08년
차입액(억원)	140	210	210	210	80	1,455	2,760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본부의 기금 차입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차입금 증가의 주요 증가원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2013년 이후 부터는 2007년도 차입분에 대한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서 이는 도시교통본부의 필수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상버스 도입

- 동 사업은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11년 본예산을 통해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100억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 차량이 초과하여 차량 대폐차가 이루어지는 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에 권고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차량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상버스 도입현황 및 계획〉

구 분	계	'09년까지	'10년	'11년	'12년	'13년이후
도입대수	3,685	1,225	329	300(계획) 203(예상)	210	1,718

- 따라서, 향후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시에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 동 사업은 서울을 찾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관광버스 불법주차 및 배회운행 등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내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당초 77억 1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등 13억 99백만원을 감추경하려는 사업입니다.
- 교통위원회에서는 2011년 예산안 심의시 정릉동 및 신림동 사업지의 경우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보상을 시행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사례와 같이 지출하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하고 예견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절차 지연이 발생하여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은,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산만 우선 편성하고 보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호1가동 용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 동 사업은 공원 등 공공용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거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1년 본예산을 통해 33억 8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동의 결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추경한 것입니다.
- 공원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2010년 7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시 부동의 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을 강행한바 있습니다²⁾

이후 도시공원위원회가 동 사안에 대해 재차 부동의 함으로써 사업이 전면취소되었는바, 이는 타 용도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편성하고 감추경하는 불합리한 예산운용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11년 10월 4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재상정 결과 부동의 처리

□ 자전거 주차장 설치

- 동 사업은 자전거 교통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와 대중교통간에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구에 시설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46백만원 대비 26.2%인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예산을 각 자치구별로 차등보조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편성 당시 강서구(강서구 교통행정과 -35616, 2010.7.19.) 등의 요청에 따라 3개구의 자전거 보관함 시설보조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예산편성 이후 강서구청에서 발산역에 설치할 자전거 밀폐형 보관함을 재검토한 결과 자전거보관함의 이용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강서구 보조예산 3억원이 감추경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자치구 사업 계획에 대한 현장확인 및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인보호구역 개선

- 동 사업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주변의 도로교통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0억원 대비 74.3%인 7억 4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³⁾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⁴⁾ 등에 따라 시설장이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 후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하지만 2011년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는 13개소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4개소에 그침에 따라 9개소 시설개선에 해당하는 7억 43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사업추진 부서의 안일하고 잘못된 사업예측으로 당초 편성예산의 대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구역지정이 신청된 개소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필요한 감추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무장애 공간조성

- 동 사업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운복지관(노원구) 및 녹색병원(중랑구)의 시설개선을 위해 2011년에 편성한 실시설계비(1억 63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 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당초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특정 대상지 주변 위주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비를 전액 불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잘못된 사업예측으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면밀한 사업 검토 및 추진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콜택시 운영

- 동 사업은 '03년 12월에 해고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총 7명)에 대한 대법원의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에 따라 해당 운전원에 대한 총 7년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13억 18백만원을 추가 편성한⁵⁾ 것입니다.
- 동 사안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차례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및 행정소송 등 소송이 지루하게 이어져 왔고, 대법원(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이 총 7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및 이에 따른 해고는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심사항목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는 취지의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항 및 제111조(벌칙)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된 사항을 조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동 사안은 대법원에서 최종판결하였듯이 당시 1년 단위 계약직 신분 이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계약연장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막대한 재정손실과 함께 수많은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평가 및 계약연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라~화곡 간선급행체계(BRT⁶) 구축

- 동 사업은 서울시 마곡지구~인천시 청라지구(23.1km)⁷)에 대한 BR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05억원 대비 91.4%인 9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BRT 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련 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편성된 예산전액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SH공사가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지연에 따라 당초 납부하기로 하였던 분담금 중 9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96억원)를 미납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감액추경되었습니다.

6) BRT : Bus Rapid Transit

7) 서울시 4.5km, 경기도 6.2km, 인천시 12.4km

○ 동 사업에 대한 감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이 겪게 된다는 점에서 분담금의 조기수납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BRT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